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6. 11.

한국산업위생협회

Naeil company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증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온열질환 예방 솔루션

제품 제안!

최근 지속적인 기온 상승과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발생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서기에 건설업, 제조업, 야외 작업자, 구급근로자 등은 열수위 관리를 불규칙으로 인해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손쉽게 휴대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염 캔디를 개발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 생활, 레저 등에도 매우 좋습니다.

식염 포도당은 전해질이 풍부 하고 나트륨과 칼슘이 함유되어 인체에 비해 본래 높은 개별포장으로 위생적이고 휴대가 편리하게 출간 할 수 있습니다. 아열기 많은 양해출로 인한 열질환으로 줄어든 체내의 염분을 보충하기와 적합한 식염 캔디입니다. 열과 함께 식염 캔디를 섭취하면 염분이 수분이 균형을 맞춘다 효과적입니다.

제품 소개!

- 열 피로 및 탈진 (온열질환 예방 식염 캔디)
- 원재료 : 설탕, 물엿, 천연염(구연산 2.8%, 구연산 0.35%, 포도당 0.335%, 황산마그네슘, 합성향료(복합향), 합성착색료(식용색소형1호), 유화제, 탄산칼슘, 카공유지
- 맛 : - 전향질 보충 (소금, 황산마그네슘, 탄산칼슘 등)
 - 수분 보충 촉진
 -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
 - 열대 일차량 레몬 및 멘디
- 포장일: 1일 5~10명 정도 섭취

주요성분 및 역할!

주요성분	역할
식염 (구연산 신안천일염)	체내 나트륨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연산	새로운 맛을 더하고 입 안을 상쾌하게 유지
포도당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탄수화물 제공
리튬향	상쾌한 레몬향으로 기분 좋은 맛 제공
황산마그네슘	영양강화
탄산칼슘	전해질 균형

주요사항!

- 육이온분자 (건설, 농업, 해양, 열대, 제조업 등)
- 스포츠 (야외, 등산, 골프 등)
- 어린이 및 노약자
- 군영 및 소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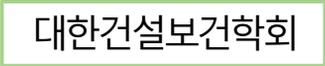
기대효과!

- 온열질환 예방 발생률 감소
- 휴대 및 섭취 편의성 (개별포장)

* 이의 유효성은 축적적인 흡수적인 전해질 보충제로 간편한 섭취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www.infoshe.com/bbs/board.php?bo_table=product11&wr_id=7



온열질환 예방 솔루션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 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직할종자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 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발생한 경우 단계별 피라 선제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원군과 경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폭염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를 3년 이상 전 대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현상을 말합니다.
- * 정부는 폭염 여름철 특별대책기간(2024.9.30)을 끝맺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정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급격도로 열 섭취 ②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고열인 장소(물시렁)를 마련 ③ 그늘막은 사방을 개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④ 일중시 위험사태에겐 즉시 냉방 장비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내 작업장은 온도와 습도를 낮추고 열원 제거에 힘써 작업 중에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휴식)를 ②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각수(물) 공급장치' 설치 ③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각수(물) 공급장치' 설치 ④ '냉각수(물) 공급장치' 설치, 냉각수, 열원 제거 등 '냉각수(물) 공급장치' 설치 ⑤ '냉각수(물) 공급장치' 설치, 냉각수, 열원 제거 등 '냉각수(물) 공급장치' 설치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선 및 시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에서 도급인과 자회사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관리제 운영

온열질환 예방 대책의 경우, 동 고시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법을 시행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개선은 의무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온열질환 예방으로 석연도당 배치

열사병으로 직할종자 발생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근로자 건강장부를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다. <개정 2017. 12. 26, 2022. 8. 10>

1. 고열·장염·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에 걸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열을 많이 흡수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품 구매 문의: (주)인포시엔 안전총 차종 02-2677-9702, 010-6439-1322 | www.infosha.com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www.infoshe.com/bbs/board.php?bo_table=product11&wr_id=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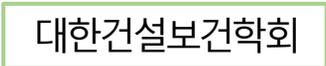
건설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

대한건설보건학회 제15회 전기 학술대회를 '건설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학회는 제15회 전기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최신 법·제도 변화와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건설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
- 일시: 2025. 6. 19. (목)
- 장소: 스페이스췌어 서울중부센터 8층 토포즈홀
- 참가신청: 신청기한 25. 6. 16.(월) 사전등록 링크 주소: <https://naver.me/FINTOHdM>

등록비 계좌 입금 후 사전등록 신청/ 참가확인증 발급 가능 (사전등록신청에 입력)

- 방식: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라인: 3만원/오프라인 5만원, 평생회원 무료), 온라인 등록 시 주소 추후 안내, 온라인 주소는 당일 문자로 안내
- 주최 및 주관: 대한건설보건학회
- 문의처: 이유진 간사 (02-3147-8572)



건설업 스마트 보건관리 우수 사례 발표 대회

2025 산업안전보건연말 건설업 스마트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자 참가신청 안내

- 주 제: 건설업 스마트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 참가대상: 건설업 스마트 보건관리 우수사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중 희망 기업(사업장)
- 참가신청: 25. 6. 16.(월) 18:00까지(사전접수 마감)
- 신청방법: kachhealth@naver.com
- 신청서류: -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신청서 1부 (주요 업무내용은 상세히) 등 1부

1. 시상내역(상장 및 상금)

구분	종류	상금	대상
대 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이백만원	1개소
최우수상	건설안전협회장상	삼백만원	2개소
우수상	중앙건설협회장상	오십만원	1개소
장려상	대한건설보건학회장상	오십만원	2개소

2. 시상부문 및 활동

-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 사례는 장년, 특약직인 경우 특별 후보
- 신청 기한: 2025. 6. 16. (월) 18:00

행사 주관객 사전등록 QR

문의처: 대한건설보건학회 02-3147-8572

심사: 대한건설보건학회

시상내역(상장 및 상금)

주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보건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정부·국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정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8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자격요건을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600382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600381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4/17, 제주 제주시] 폐기물 수거함과 차량 사이에 끼임

산업안전보건, 책에서 디지털기기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대형서점 e-Book 구독서비스 및 지자체 공공 전자도서관 등에 무료 배포하여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만화규칙")』을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전자책(e-Book)이란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될 수 있는 저작물이 디지털데이터 형식으로 전자 기록매체나 저장장치에 수록된 뒤,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 등으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도서

이 만화규칙을 현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안전보건자료실)에서 e-Book, PDF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형태의 책자로도 받아볼 수도 있다.

더불어, 이번 만화규칙 전자책(e-Book)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칙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이를 디지털 e-Book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 확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교육(TBM)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기대된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안전은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전자책을 시작으로 안전보건 콘텐츠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82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맞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협의회와 MOU ... "안전문화 확산 협력"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협의회와 6월 5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
 - 일시 : 2025. 6. 5.(목) 13:30 ~ 14:00
 - 장소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 참석 : (공단) 이창호 교육홍보이사, 박동언 외국인전담팀장 (협의회) 김재업 협의회장, 유경혜 총무 등 8개 지역 센터장

이번 협약으로 매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체험교육과 안전문화 활동 등이 강화된다. 8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는 매주 수백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담과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공단은 VR 체험교육 시설을 협의회 회원센터에 점진 확대하고, 보호구 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단에서 제공한 VR 체험교육 시설과 보호구 키트를 활용해 센터에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통역원들을 활용한 활동도 강화된다. 공단은 전국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14개국, 88명의 외국인 통역원을 통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센터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행사에도 양 기관이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 이창호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의 중심 거점이 확보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양 기관이 산재예방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81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정말 그게 쏟아지면 어떡하지

진행중인 공포, 악성중피종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석면의 발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석면의 전면적인 사용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죠. 국내에서는 과거 신문 보도를 살펴 보면, 석면의 발암성에 대해서 약 1970년도부터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럽 각국은 1990년대에 선제적으로 석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Lancet에는 예측 연구가 한 편 실렸습니다. 과거 영국의 석면 수입량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악성중피종 환자는 202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연간 2,000~3,000명의 환자가 영국에서 중피종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의 악성중피종

한편, 한국에서의 악성중피종 발생률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계 주요 선진국의 악성중피종의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영국이 가장 높고, 한국과 대만이 아주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림 2). 우리나라에서도 악성중피종의 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에 10년간 감시체계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다만, 감시체계를 통해 발견된 사례의 수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았습니다.

국내 악성중피종의 발생 추이를 예측하는 연구들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광경민 교수님께서 주저자로 발표하신 두 건의 연구에서는 악성중피종의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석면 수입량을 고려한 최근 모델에서는 203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1995년 영국 연구에서, 영국의 석면 수입량의 최정점은 1960년대 연간 16만톤 가량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2년 석면 수입이 약 10만 톤으로 정점을 보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석면 사용은 영국과 약 30년의 시차를 보입니다. 석면 사용이 활발했던 기간동안 영국 전체 인구가 6000만 명 선을 넘기고 한국은 5000만명 정도임을 고려해 보면, 한국의 석면 수입량이 영국에 비해 비교적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한국에서 석면을 활발하게 사용할 때 위험성이 더 잘 알려져 있었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행 정도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외국 학자들에게 소개하였을 때, 대부분 첫 반응은 과소발견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차이가 워낙 크니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과 암등록 체계를 고려해 보면 과소발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면 종류에 따른 차이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수입량 통계는 2000년대 이전까지 석면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 우리 학회지에 청석면에만 노출된 사례가 보고된 바를 고려해 보면, 백석면 뿐만 아니라 청석면 계열도 상당히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자영업자는 얼마나 건강할까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불안과 건강 문제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건강은 더 아프다

한국에서도 자영업자라고 다 똑같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건강이 더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았고, 그중에서도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의 건강이 가장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자영업자 안에서도 누가 더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건강 격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로, 그리고 멈출 수 없다는 것

한국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15%는 주 68시간을 초과합니다. 이는 일반 임금근로자의 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과로는 일상이지만, 멈추는 순간 수입도 끊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참고 일하게 되고 결국 건강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률이 낮습니다. 2018년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거나 일을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 과로 + 사회보장 사각지대라는 3중의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고용의 질’이 건강을 나눈다

국내에서 수행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한국 남성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사망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사망 위험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약 1.8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심혈관질환, 간질환, 외상 등 예방 가능한 사망의 비율이 높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고용 상태’ 차이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보장제도, 의료 접근성 부족이 겹칠 때 그 누적된 위험이 실제 사망에 이르는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30/>